

어보소고(御寶小考)

黃慶煥

- ① 개설(概說)
- ② 새(璽)
- ③ 보(寶)
- ④ 인(印)
- ⑤ 일본(日本)이 가져갔던 새(璽)·보(寶)
- ⑥ 새(璽)·보(寶)·인(印)의 현황(現況)

一. 개설(概說)

어보(御寶)는 왕자(王者)의 인(印)이다. 중국(中國)인 고대(古代)에는 귀천(貴賤)을 물론(勿論)하고 인(印)을 새(璽)라 하였으나, 진(秦)에 와서는 황제(皇帝)의 인(印)만을 새(璽)라 칭(稱)하고 그 밖의 신하(臣下)들의 것은 이를 새(璽)라 칭(稱)하지 못하게 하였다. 기후(其後) 당(唐)의 현종(玄宗)이 다시 보(寶)라고 고쳤다고 하니(문헌촬요(文獻撮要)) 인(印), 새(璽), 보(寶)는 각기(各其) 그 명칭(名稱)은 다르나 왕자(王者)의 인(印)이라는 점(點)에서는 같은 것이므로 이를 모두 어보(御寶)라 칭(稱)하여도 무방(無妨)할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고찰(考察)한다면 그것에는 이른바 전국새(傳國璽)처럼 일국(一國)의 주권(主權)을 상징(象徵)하는 중요(重要)한 것으로부터, 우리 종묘(宗廟) 각실(各室)에 있는 이른바 금보(金寶)처럼 왕자(王者)의 생전(生前)에는 쓰여진 일이 없고 기(其) 사후(死後)에 비로소 시호등(諡號等)을 새긴 단순(單純)한 의식적(儀式的)인 것까지 여러 가지 종류(種類)가 있으므로 본(本) 소고(小考)에서는 왕자(王者)가 생전(生前)에 사용(使用)하던 정치성(政治性)을 띤 어보(御寶)에 대(對)해서만 고찰(考察)해 보기로 한다. 또 정치성(政治性)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其) 명칭(名稱)이 인(印), 새(璽), 보(寶)가 아니거나, 혹(或)은 기(其) 재료(材料)가 옥(玉), 금(金), 도금(鍍金)이 아닌 것, 예(例)컨대 압(押)(수결)류(類), 병부류(兵符類), 표신류(標信類) 등(等)도 제외(除外)한다. 어보(御寶)중(中)에서도 제일위(第一位)의 어보(御寶)는 왕자(王者)의 신분(身分)을 표시(表示)하는 것이다. 중국(中國) 천자(天子)의 어보(御寶)는 그 인문(印文)에 수명우천(受命于天), 수천지명(受天之命), 승천수명(承天受命), 수명원보(受命元寶), 황천경명(皇天景命), 수천명명(受天明命), 승천대보(承天大寶) 등(等)의 문자(文字)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아야만 천자(天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思想)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천자(天子)는 반드시 어보(御寶)를 가져야 하며, 어보(御寶)를 갖지 못한 천자(天子)는 이른바 백판천자(白板天子)로서 천자(天子)의 자격(資格)이 없다고 생각(生覺)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실례(實例)가 있다.

① 한(漢)나라 말년(末年), 천하(天下)가 혼란(混亂)할 때, 옥새(玉璽)를 맡았던 자(者)가 옥새(玉璽)를 우물에 던졌다. 오(吳)나라 손견(孫堅)이 조조(曹操), 유비(劉備)와 더불어

연합군(聯合軍)을 편성(編成)하여 역신(逆臣) 동탁(董卓)을 토벌(討伐)하던 도중(途中) 낙양(洛陽)에 주둔(駐屯)하였을 때 마친 한 우물에서 오색(五色)의 서기(瑞氣)가 발산(發散)하는 것을 보고 이 속에서 전국새(傳國璽)를 발견(發見)하였다. (오서(吳書)) 손견(孫堅)이 야심(野心)이 있어 이를 독점(獨占)하고 삼인공유(三人共有)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삼인(三人)이 대립(對立)하여 결국(結局) 촉(蜀), 위(魏), 오(吳) 삼국(三國)을 이루고 말았다.

② 이씨조선(李氏朝鮮)에서는 왕(王)이 승하(昇遐)하시면 궁중(宮中)의 웃어른, 예(例)컨대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재빨리 어보(御寶)를 거두셨다가 의중(意中)의 인물(人物)을 택(擇)하시어 왕위(王位)에 오르시게 하시는 동시에(同時)에 어보(御寶)를 신왕(新王)에게 드리신다. 신왕(新王)의 자격(資格)은 어보(御寶)를 받음으로써 발생(發生)된다. 대왕대비(大王大妃)의 이 권리(權利)는 절대적(絶對的)이어서 대신(大臣)도 기타(其他) 누구도 감(敢)히 간섭(干涉)하지 못한다. 헌종(憲宗)이 승하(僧下)하였을 때의 순원왕후(純元王后)와 철종(哲宗)이 승하(昇遐)하셨을 때의 신정왕후(神貞王后)(조대비(趙大妃))의 경우(境遇)가 바로 그것이다.

③ 어보(御寶)가 이렇게 소중(所重)한 것이므로, 지밀(至密)(왕(王)이 계시는 곳)에 항상(恒常) 갖고 계시며 거동(舉動)하실 때는 차(車)에 싣고 다니신다. 감사(監司), 군수 등(郡守等) 지방관(地方官)들도 기직인(其職印)을 편시(片時)도 몸에서 멀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국왕(國王)의 어보(御寶)에 대(對)한 태도(態度)를 본 받은 것이리라.

二. 새(璽)

옥(玉)으로 만든 왕자(王者)의 인(印)이 새(璽)라는 설(說)(교주대전회통(校註大典會通))은 틀리다. 옥제(玉製)이면 모두가 새(璽)인 것은 아니니 그것은 옥보(玉寶)도 있고 옥인(玉印)도 있기 때문이요. (옥보(玉寶)와 옥인(玉印)은 우리 종묘(宗廟)에 있다.) 또 대한제국(大韓帝國) 당시(當時)의 대한국새(大韓國璽)는 천은(天銀)(양질(良質)의 은(銀))제(製)를 도금(鍍金)한 것이었으니 새(璽)의 옥제(玉製)아닌 것도 있었던 증거(證據)이다. 그러므로 새(璽)는 기(其) 재료(材料)가 옥(玉)이든지 아니든지 불문(不問)하고 천자(天子)나 황제(皇帝)의 인(印)의 어떤 시대(時代)에 있어서의 통칭(通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妥當)할 것이다. 인정전(仁政殿) 동행각(東行閣) 진열장(陳列櫥)안에 옥새(玉璽)라고 흔히 부르는 커다란 옥인(玉印)이 있는데 기(其) 인문(印文)에 위선최락(爲善最樂)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락선재(樂善齋)에서 사용(使用)하던 것으로 생각(生覺)되거나 문헌(文獻)에도 없으니 새(璽)라고 할 수는 없다.

진(秦)나라에는 여섯 개(육과(六顆))의 옥새(玉璽)가 있었다. 황제행새(皇帝行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신새(皇帝信璽), 천자행새(天子行璽), 천자지새(天子之璽) 및 천자신새(天子信璽)가 그것인데 각각(各各) 기(其) 용도(用途)가 달랐다. 예(例)컨대 황제행새(皇帝行璽)는 책봉(冊封)할 때 쓰는 것이고, 황제지새(皇帝之璽) 제후(諸侯), 왕(王)에게 하사(下賜)하는 서(書)에, 그리고 황제신새(皇帝信璽)는 발병(發兵)할 때나 대신(大臣)을 불러들일 때 쓰는 등등(等等)이다. 이른바 전국새(傳國璽)는 황제행새(皇帝行璽)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中國)에서는 전국새(傳國璽)가 진(秦)에서 당(唐)에 이르기까지 약(約) 900년(九百年)에 걸쳐 여러 황제(皇帝)에 의(依)하여 전(傳)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제육(秦始皇本紀第六))

우리나라에서 새(璽)를 사용(使用)한 임금님은 고금(古今)을 통(通)하여 단 세분 뿐이었다.

한분은 고구려(高句麗) 대무신왕(大武神王)이시고 다른 두 분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이시다. 대무신왕(大武神王)은 기(其) 5년(五年)(A.D.22)에 부여(扶餘)를 치러 가시던 도중(途中) 이물림(利勿林)에서 천사(天賜)의 금새(金璽)를 배수(拜受)하셨다는 것이고(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고종(高宗), 순종(純宗) 두 폐하(陛下)께서는 천사(天賜)가 아닌 신하(臣下)가 드리는 옥새(玉璽)와 금새(金璽)를 받으셨던 것이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고종(高宗), 순종(純宗) 두 분이 쓰시던 새(璽)가 2과(二顆)있었다. 하나는 대한국새(大韓國璽)요 다른 하나는 황제지새(皇帝之璽)인데 ① 대한국새(大韓國璽)는 국서(國書)에 찍던 것으로 인면(印面)은 정방형(正方形)으로서 일면(一面)의 길이는 97MM이었다. (예기척삼촌오분평방(禮器尺三寸五分平方)), 예기척일척(禮器尺一尺)은 28cm) 한일합방후(韓日合邦後) 일본(日本)에서 가져간 것을 1949년(一九四九年)에 회수(回收)해 왔으나 지금(只今)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이다. ② 황제지새(皇帝之璽)는 훈기(勳記)에 찍던 것인데 기(其) 재료(材料), 크기 소재 등(所在等)은 ①과 마찬가지로이다.

三. 보(寶)

보(寶)에는 옥(玉)으로 만든 것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大部分)은 천은(天銀)에 도금(鍍金)했거나 흑(或)은 순금(純金)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보(金寶)라고 통칭(通稱)한다. 중국(中國)에서는 당(唐)의 현종(玄宗)이 진(秦)으로부터 전래(傳來)한 옥제(玉製)의 이른바 전국새(傳國璽)를 고쳐서 전국보(傳國寶)라 칭(稱)하고 기(其) 인문(印文)도 수명우천기수영창(受命于天既壽永昌)이던 것을 승천대보(承天大寶)라고 고치고 옥새(六璽) 대신(代身)에 팔보(八寶)를 두는 등(等) 대개혁(大改革)을 단행(斷行)했으나 영속(永續)되지 못하고, 기후(其後) 송(宋), 원(元), 명(明)에 걸쳐 개조(改造)와 환원(還元)이 여러 번 반복(反覆)되었다.

우리 나라 국초(國初)로부터 지금까지의 금보(金寶) 흑(或)은 옥보(玉寶)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도표참조(圖表參照))



純祖肅皇帝寶

순조숙황제보(純祖肅皇帝寶)

<비고(備考)>

- ① 예기척(禮器尺) 1척(尺)은 28cm이다.
- ② 천은(天銀)은 양질(良質)의 은(銀)을 말함.
- ③ 조선왕보(朝鮮王寶)는 대한제국성립이전(大韓帝國成立以前)에 쓰던 것이고 황제지보(皇帝之寶)는 그 후(後)에 쓰던 것인데, 모두 중국(中國)의 전국보(傳國寶)에 해당(該當)하는 대보(大寶)이다.
- ④ 일본국서(日本國書)와 동통신문(同通信文)에 쓰던 보(寶)는 여럿이 있으나, 이것은 일시(一時)에 혼용(混用)한 것이 아니며 시대(時代)에 따라 사용(使用)된 보(寶)의 종류(種類)가 이렇게 여럿이 있었던 것이다.

四. 인(印)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그의 인(印)을 새(璽)라 했고, 당(唐)의 현종(玄宗)이 이를 보(寶)라고 개칭(改稱)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우리 조선(朝鮮)에서도 중국(中國)의 천자(天子)와 대등(對等)하게 움직이던 고구려(高句麗)의 대무신왕(大武神王)같은 분은 당당(當當)히 금새(金璽)를 썼던 것이나, 기후(其後) 역대(歷代)의 왕조(王朝)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성립(成立)될 때까지의 오랫동안 중국제후(中國諸侯)로 자처(自處)해왔기 때문에 중국(中國)에 대(對)하여는 감(敢)히 새(璽)나 보(寶)를 쓰지 못하고 중국(中國)이 보내준 조선왕인(朝鮮王印)을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인(印)에 관(關)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록(記錄)이 있다.

- ① 신라남해왕(新羅南解王) 16년(一六年)(A.D.19) 북명(北溟)에서 예왕(濊王)의 인(印)을 주어서 바친 사람이 있었다. 받을 갈다가 얻은 것이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考))

② 고려명종(高麗明宗) 2년(二年)(A.D.1172(一一七二)) 금(金)나라의 천자(天子)가 금인(金印) 한 개(個)를 하사(下賜)했다. (동(同))

③ 고려(高麗)충렬(忠烈)왕(王) 7년(七年)(A.D.一二八一) 원(元)의 천자(天子)가 그의 사위인 왕(王)에게 선명정동행중서성인(宣命征東行中書省印)을 하사(下賜)했다. (동(同))

④ 동일(同一) 7년(七年)(A.D.一二九一)에 원(元)의 천자(天子)가 우리나라 왕세자(王世子)에게 금인(金印)을 하사(下賜)하였다. 세자(世子)에게 사인(賜印)하는 일은 전(前)에는 없던 일이었다. (동(同))

⑤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9년(九年)(A.D.一三七〇) 명(明)의 고황제(高皇帝)가 금인(金印)을 하사(下賜)했다. 인면(印面)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으로 되어있다. (동(同))

⑥ 우리 태조(太祖) 2년(二年)에 이념(李恬)을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고려(高麗)의 인(印)과 신(信)을 명(明)에 바쳤다. (춘관통고(春官通考))

⑦ 태종원종(太宗元年)에 명(明)의 황제(皇帝)가 금인(金印)을 하사(下賜)했고 동3년(同三年)에도 금인(金印)을 하사(下賜)하였다. (동(同))

이상(以上)으로서 알 수 있듯이 조선왕(朝鮮王)의 인(印)은 자의(自意)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中國)의 천자(天子)가 하사(下賜)한 것을 사용(使用)하는 것이다. 또 사용(使用)하지 않게 되는 경우(境遇)에는 ⑥의 경우(境遇)와 같이 반납(返納)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국문서(對中國文書)에는 조선왕신이○(朝鮮王臣李○)라고 서명(署名)하고 왕인(王印)을 찍으시었던 것이다. 단(但) 일본(日本)에 대(對)해서는 당당(當當)하게 왕보(王寶)를 쓰시고 왕인(王印)은 사용(使用)하지 않으셨다.

대한제국(大韓帝國)수립(樹立)이후(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 보(寶)였고 인(印)은 왕세자인(王世子印),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 순비지인(淳妃之印), 황귀비인(皇貴妃印), 영왕지인(英王之印) 등(等)이 있었을 뿐이었다.

五. 일본(日本)이 가져갔던 새(璽)·보(寶)

1910년(一九一〇年) 8월(八月) 29일(二九日) 한일합방(韓日合邦)이 조인(調印)되자 그 이듬해 3월3일(三月三日) 이조직차관(李朝職次官)인 소궁삼보송(小宮三保松)은 구한국(舊韓國)의 국새(國璽)와 보등(寶等) 육과(六顆)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인계(引繼)했는데 그것은 ① 대한국새(大韓國璽), ② 황제지새(皇帝之寶), ③ 대원사보(大元師寶), ④ 제고지보(制誥之寶), ⑤ 칙령지보(勅令之寶), ⑥ 칙령지보(勅令之寶) 이상(以上) 각(各) 일과(一顆)였다. (순종황제실록부록일책권지이제사장전면(純宗皇帝實錄附錄一冊卷之二第四張前面) 이것은 대한민국성립후(大韓民國成立後) 회수(回收)했다가 1949년(一九四九年) 1월(一月) 23일(二三日) 내각지인(內閣之印), 내각총리대신장(內閣總理大臣章) 각(各) 1개(一個)와 함께 도합(都合) 8개(八個)를 덕수궁(德壽宮)에서 전시(展示)한 일까지 있었으나, 기후(其後) 6·25사변(事變)을 겪고 나서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寶), 칙령지보(勅令之寶), 내각지인(內閣之印), 내각총리대신장(內閣總理大臣章) 등(等) 5개(個)는 소재불명(所在不明)이 되고 말았다.

六. 새(璽)·보(寶)·인(印)의 현황(現況)

필자(筆者)의 아는 바에 의(依)하면 대한민국(大韓民國)에는 현재(現在)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있는 대원사보(大元師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칙령지보(勅令之寶)와 종묘(宗廟)에 있는 금보(金寶) 141개(個), 옥보(玉寶) 130개(個), 금인(金印) 7개(個), 옥인(玉印) 31개(個), 은인(銀印) 4개등(個等) 313개(個)를 합(合)하여 도합(都合) 316개(個)가 있을 뿐이고 새(璽)는 한 개(個)도 없다. 어디에 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새보인(璽寶印)이 만일(萬一)에 정말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면 허무(虛無)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제 그 원인(原因)을 더듬어 보자.

첫째로는 빈번(頻繁)했던 화재(火災)를 들 수 있다. 태조(太祖)의 등극(登極) 이래(以來) 금일(今日)까지 약(約) 570년(五七〇年) 동안에 각궁(各宮)의 대화재(大火災)가 21회(回)나 있었다. 선조(宣祖), 인조(仁祖)연간(年間)의 난민(亂民)들의 7회(回)에 걸친 방화(防火)가 오대궁(五大宮)을 잿더미로 만든 것은 일반(一般)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事實)이지만, 기외(其外)에도 중종(中宗) 38년(年), 명종(明宗) 24년(年), 동(同) 29년(年), 동(同) 30년(年), 동(同) 33년(年), 고종광무(高宗光武) 8년(年) 및 1917년(一九一七年)의 화재(火災)에서 역대(歷代)의 보물(寶物)과 유물(遺物)이 여지(餘地)없이 타 없어졌다고 궁궐지(宮闕志)에 명기(明記)되어 있으니 기(其) 피해도(被害度)를 추측(推測)할 수 있다. 궁궐(宮闕)의 화재(火災)가 대화재(大火災)로 되기 쉬운 이유(理由)로는 재목(材木)이 크고 굵어서 한번 인화(引火)되면 끄기가 어렵다는 점(點), 전각(殿閣)이 밀집(密集)되어 있어서 연소(燃燒)되기 쉽다는 점(點)을 들 수 있겠으나, 그밖에도 방화시설(防火施設)이 빈약(貧弱)했다는 것과, 궁(宮)에 화재(火災)가 일어나면 화재자체(火災自體) 보다도 잡인(雜人)들이 궁(宮)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여 궁문(宮門)을 굳게 닫아 버렸다는 것도 큰 원인(原因)이 되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화재(火災)때 마다 지밀(至密)하게 보관(保管)되었던 새보인(璽寶印)의 상당(相當)한 수량(數量)이 없어졌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도난(盜難)이 심(甚)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불행(不幸)하게도 궁궐(宮闕)이 공백상태(空白狀態)가 되어 궁중(宮中)에 난민(亂民)들이 틈입(闖入)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전(前)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이괄(李适)의 난(亂),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최근(最近)에는 8·15해방(解放)과 6·25동란(動亂)때가 그것이다. 8·15해방(解放)때만 하더라도 난민(亂民)들이 창덕궁(昌德宮)에 몰려들어 물건을 지고 이고 날라가는 모양이 마치 동대문시장(東大門市場) 같았다고 하니, 여러차례의 공백상태하(空白狀態下)에서 궁중(宮中)이 입은 피해(被害)의 정도(程度)를 상상(想像)할 수 있다. 특(特)히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전국새(傳國璽)인 대한국새(大韓國璽)와 황제지보(皇帝之寶)가 6·25사변(事變)을 전후(前後)하여 행방불명(行方不明)이 되었다는 것은 큰일이다. 중국(中國)에서도 전국새(傳國璽)를 여러 차례 잃었다가 여러 차례 도로 찾았다고 하거니와, 우리도 전국새(傳國璽)만은 도로 찾게 되기를 희망(希望)하는 바이다.

기록(記錄)에 남아있는 많은 새보인(璽寶印)이 실제(實際)로는 전(傳)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理由)로는, 마지막으로, 누차(屢次)의 개주(改鑄)를 들 수 있다. 구새보인(舊璽寶印)을 개조(改造)하는 경우(境遇)에는 낡은 것을 그대로 두고 따로 새것을 주조(鑄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예(例)는 낡은 것을 녹여서 새 것을 만들었다. (고종(高宗) 12년(一二年) 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 그러므로 문헌(文獻)에는 많은 수(數)의 것

이 있으면서도 실물(實物)이 그리 많지 못한 이유(理由)를 어느 정도(程度) 이해(理解)할 수 가 있다.

(필자(筆者) 창경원장서각(昌慶苑藏書閣) 근무(勤務))